

	<h2 style="margin: 0;">교직원 연봉제 규정</h2>	문서번호	MSU-
		제정일자	2017. 02. 17.
		최종개정일자	2020. 03. 01.
		담당부서	행정지원처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목포과학대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의 교직원 연봉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연봉제 적용 교직원의 연봉계산·지급 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본 규정과 신규교원 연봉책정 지침을 타 규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단, 본 규정과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노동관계법령 및 타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0.03.01>

제3조(연봉 적용대상)

- ① 이 규정은 연봉계약 교직원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단, 연봉제 적용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2015년도부터 별지서식(3)에 의거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전환하는 연봉제 교직원은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실시한다. 단, 연봉제로 즉시 적용하지 않고 현행 호봉제 급여체제로 일정기간을 유지 한 후 이 규정에 따라 연봉제를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20.03.01>

제4조(연봉 계약)

- ① 교직원은 별지서식(1)에 의거 연봉제적용 동의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보안유지 등)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 ② 교직원은 별지서식(2)에 정한 바에 따라 연봉계약을 체결한다.

제5조(연봉 적용 대상 기간)

연봉적용 대상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 단위를 원칙으로 한다. 단, 학기중 계약만료시에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성과평가 기간)

교직원의 연봉책정을 위한 업적 및 성과평가 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단, 신규 중도 임용자의 경우 채용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할 수 있다.

제7조(연봉 책정)

- ① 교직원 개인에 대한 연봉은 대학성과평가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성과평가 결과와 대학 재정 여건등을 감안하여 연봉조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 에서 심의한다.
<개정 2017.3.13>

- ②신임 교원의 기본연봉 책정은 「신규 교원 연봉책정 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라 책정한 다. 단, 신규 교원의 연봉은 학력, 경력 등을 고려하여 1등급까지 상향 조정 할 수 있다. <개정 2020.03.01>
- ③연봉제교원의 기본연봉은 정년트랙과 비정년트랙을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03.01>
- ④연봉제직원의 기본연봉은 정규직과 계약직 직원으로 구분하여 정 할 수 있다. <신설 2020.03.01>

제8조(비밀유지)

연봉제를 적용 받는 교직원 및 급여 담당자는 자신 또는 다른 교직원의 연봉액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의도적으로 타인의 연봉을 알려고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장 연 봉 체 계

제9조(급여체계)

연봉적용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총액연봉제로 하되 이는 기본보수와 보수외 수당으로 구성된다.

제10조(기본보수 및 보수외 수당)

- ① 기본보수는 본봉으로서 연간 소정 근로시간분의 통상임금으로 기준임금이 된다.
- ② 기본보수외 수당은 기본보수를 제외한 가족수당, 학비보조수당, 직책수당, 등의 변동성 있는 수당으로 한다.

제3장 연 봉 계 산

제11조(계산 기간)

- ① 연봉의 월 지급액 계산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 ② 연봉 계산기간은 연봉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까지로 한다. 단, 학기중 중도 계약 만료시 기간을 조정 할 수 있다.

제12조(지급방법 및 지급일)

총 연봉을 1/12로 나누어 매월 급여일(17일)에 정액 지급한다.

제13조(미 타결 연봉 지급 방법)<개정 2017.3.13>

- ① 교직원과의 연봉계약이 만료된 후 연봉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연봉계약 만료 일로부터 연봉 조정기간까지는 기존 연봉을 지급한다. 단 미 타결 연봉은 소급하여 지급 하지 않는다.
- ② 대학이 성과평가 결과를 토대로 산정한 연봉조정액에 대해 해당 교직원이 연봉계약일 만료일부턴 1개월 이후까지 특별한 사유없이 고의로 연봉계약 체결을 미루거나 거부한

경우는 다음연도 연봉으로 정한다.

③연봉조정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경우는 연봉조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봉을 확정한다.<개정 2017.3.13>

제14조(연봉 공제)

연봉제 적용 교직원이 결근, 휴직, 출근정지 등으로 소정 일수를 근무하지 못할 경우 그 기간을 산정하여 해당하는 기간만큼 연봉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5조(일할 계산)

연봉 일할계산 사유가 발생할 경우 기본보수와 기본보수외 수당을 월별로 나누어 지급한 금액의 30분의 1을 1일분으로 나누어 산정한다.<개정 2017.3.13>

제4장 연 봉 지 급

제16조(일할계산 지급자)

신규채용, 감봉, 휴직, 퇴직 등 인사발령이 있는 해당 월의 연봉은 발령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한다.

제17조(퇴직자 연봉)

연봉 근로계약자중 퇴직한 교직원은 퇴직 후 잔여 연봉기간에 대하여 연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8조(징계 기간의 연봉지급)<개정 2020.03.01>

- ①징계처분에 따른 감봉기간 동안은 기본보수 지급액의 1/3을 감하여 지급한다.
- ②징계처분에 따른 정직기간 동안은 기본보수 지급액의 2/3을 감하여 지급한다.

제19조(휴직기간중의 연봉지급)<개정 2017.3.13><개정 2020.03.01>

연봉제 적용을 받는 교직원은 학교법인 영신학원정관 제66조(휴직기간의 봉급)의 규정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제5장 연 봉 조 정

제20조(연봉조정심의위원회 운영)<개정 2017.3.13>

- ①대학은 매년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익년도 임금인상 재원을 결정하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기준에 의해 연봉조정심의위원회에서 연봉을 심의 조정한다.
-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교직원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 ③위원장은 기획처장이 되고, 위원은 학사지원처장, 산학취업처장, 행정지원처장, 총장이 위촉하는 3인 이내의 교원과 행정직원으로 한다.
- ④위원회에서는 연봉책정, 연봉조정 이의신청 등을 심의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한다.

제21조(연봉조정 종류)

연봉조정 시기는 정기조정과 수시조정으로 구분한다.

제22조(연봉 정기조정)<개정 2017.3.13>

교직원의 임용일 기준으로 개인의 업적 및 성과평가 결과등을 감안하여 조정한다.
단, 연봉제 전환자는 연봉제 전환 시행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23조(연봉 수시조정)

연봉계약 기간 중일지라도 다음 각 호의 연봉조정 사유가 발생할 경우 수시로 연봉조정을 할 수 있다.

1. 승진, 강등 등 인사 규정상 신분 변동이 있을 경우
2. 복무규정에서 정한 직무 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경우
3. 대학 경영상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4. 연봉 결정 사유가 허위, 부정한 방법 등으로 결정되었을 경우
5. 기타 대학에서 연봉조정이 필요한 경우

제6장 성과급

제24조(성과급)

- ① 대학은 매년 경영성과와 업무달성에 따른 성과급의 지급 유무를 결정할 수 있다.
- ② 성과급은 개인별 업적과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다.

제7장 부가급

제25조(부가 급여)

대학은 연봉과는 별도로 교직원의 복리후생이나 직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장 연봉결정 통보

제26조(연봉 통보)

대학은 연봉평가기간 중 대학성과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업적평가, 성과, 능력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연봉 결정에 반영하며, 교직원 개인별로 연봉을 통보 하고 연봉 계약서를 체결한다.

제27조(이의 신청)

연봉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교직원은 연봉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행정지원처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28조(이의 신청 처리)

대학은 이의 신청을 접수한 후 연봉 책정 근거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심의 결과를 직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동 기간내에 심의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는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29조(재 계약)<개정 2017.3.13>

① 교직원은 조정 연봉에 이의가 없는 경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연봉 계약서에 서명 날인후 행정지원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서를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대학의 연봉 계약에 동의하여 재계약한 것으로 간주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0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03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서식1)

연봉제 적용 동의서

목포과학대학교 귀중

본인은 대학에서 정한 연봉제에 대하여 연봉평가 및 적용방식 등 그 내용을 숙지하고 아래와 같이 성실히 준수 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연봉제 관련 규정과 연봉평가 및 적용방식 등 대학에서 정한 연봉제 관련규정을 숙지하고 그 절차에 따른다.
2. 본인의 연봉에 대한 보안을 유지하고 타인의 연봉을 알려고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업무상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연봉내용을 인지할 경우에도 그 내용을 절대로 공개하지 아니한다.
3. 상대적인 연봉차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다만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되는 연봉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대학에서 정한 이의 절차를 거치도록 한다.
4. 위 각 호의 내용 및 기타 연봉제에 관하여 학교에서 정한 바를 준수하고 이를 위반시 그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한다.

20 년 월 일

성 명 : _____ (인)

학 과 (부 서) : _____

직 책 : _____

주민등록번호 : _____

(별지서식2)

연 봉 계 약(통보)서

목포과학대학교 총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_____ (이하 "을"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연봉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기간) _____년 ____월 ____일부터 _____년 ____월 ____일까지(____월간)

제2조(연봉)

- ① 기본보수는 연봉 _____원(W _____원)으로 한다.
단, 수습기간 중의 월보수는 기본보수의 _____%로 한다.
- ② 기본보수외 가족수당, 학비보조수당 등 변동성 있는 보수외 수당은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제3조(보수의 지급) 계약 기간동안 매월 균등하게 교직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 ### 제4조(보수외 급여)
- ① 비과세급여, 복리후생비 성격, 특정업무수당, 초과강의수당 등은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 ② 연가 등 당해 연도의 모든 휴가일수를 사용하여야 하며, 대학은 미사용 휴가일수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 ### 제5조(연도별 연봉계약서)
- ① 최초 계약 이후의 매 연도별 연봉계약서는 당해 연도 연봉계약통보서로 같음한다.
 - ② "을" 은 연봉계약통보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행정지원처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③ "갑"은 교직원연봉제규정 제23조(연봉수시조정) 조항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수시로 연봉을 재조정 할 수 있다.

제6조(보안의무) "갑"과 "을"은 연봉계약에 대한 보안의무를 준수하고, "갑"과 "을"은 각각 귀책사유에 따라 보안의무 위반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제7조(기타사항)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사항은 교직원 연봉제 규정과 관례에 따른다.

20 년 월 일

(갑) 목포과학대학교
총장 _____ (인)

(을) 학 과(부서) _____
주민등록번호 _____
성 명 _____ (인)

호봉제의 연봉제 전환동의서

1. 동의자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

2. 동의자 현재의 급여체계(호봉제) 내역

- | |
|--|
| 1. 급여체계 : 대학교 교직원보수규정에 의한 호봉제 적용
2. 현재의 호봉과 급호 : <u>교직원 호봉표</u> 급 제 호봉
3. 기타 : 보수규정 적용 |
|--|

3. 연봉제 전환 동의내용

- ①상기인은 목포과학대학교가 희망자에 한하여 시행하는 급여체계 변경 <호봉제에서 연봉제>에 대하여 이의없이 동의한다.
- ②연봉제 전환시기는 20 년 월 일부터 확정 · 적용함을 동의한다.
- ③20 년 연봉급은 대학성과평가규정이 정한 최근의 평가등급에 의하여 정한다.
- ④본인은 대학교가 정하는 교직원연봉제규정과 연봉계약(통보)서에 동의한다.
- ⑤본인은 20 년부터 확정된 연봉제 전환 동의를 조건으로 승진(승급)하는 것이므로 본인이 20 년도 연봉제전환을 거부하거나 철회한 경우에는 조건부 승진(승급)에 따른 승진과 호봉인상 해당 급여 차액을 반환할 것을 확약한다.
- (가)반환할 급여범위 : 20 년 승진시부터 거부.철회한 때까지의 승진과 호봉상승분 해당액
- (나)발생되는 반환 급여는 발생일 이후 월급에서 차감하는데 이의없다.
- ⑥승진(승급)효력은 본인이 연봉제 전환을 철회한 날 자동 취소되고 승진(승급)전 호봉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20 년 월 일

동의자 : _____(서명()), 지장날인()

첨부

1. 동의서는 지장날인 및 서명 후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사본 첨부